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1.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1)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35 총회회관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산을 소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지 경영한다.

1. 본 재단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리
2. 학생 육성 및 봉사 사업
3. 기독교 선교 활동
4. 보육시설 및 유치원 사업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립 유지 경영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15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여성위원 1인 이상 포함), 감사 2인

제6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임원의 반수 임기는 전항의 임기의 반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공천위원회의 공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하며, 지체 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기 전의 임원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총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 총회를 거쳐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상임이사 선임)

총회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서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제10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의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전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4.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자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이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총회 및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제1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람

제15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 의결은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 이외의 사무 처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지 기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본 정관 제1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전항에 대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4장 자산과 회계

제20조 (자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2종으로 나눈다. 기본 재산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연도말 보고 목록)과 같다. 기본 재산 이외의 자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자산의 관리)

1. 기본 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경비의 유지 방법)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 이에 충당한다.

제23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 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서 상환되는 차입금은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6조 (설치)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7조 (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9조 (직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등의 보고)

익년도 사업 계획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33조 (개정 및 시행)

1.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2. (정관 효력)

본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임원 명단 및 임기는 생략)

1966년 9월 제51회 총회 제정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1994년 9월 제79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